

[첨부1]

『조달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을 위한 의견제시

제정안	협회안	사유
<p>평가항목 : 기술개발·사용실적</p> <p>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p> <p>2) 사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p> <p>3) 위 1),2)의 개발실적·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4) 위 1)의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p>《활용실적》</p> <p>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p> <p>2) 사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단,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한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한다.</p> <p>3) 좌동</p> <p>4) 좌동</p>	<p>1) 좌동</p> <p>2) 신기술,특허의 활용: PQ 배점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력 확보, 기술 경쟁력 강화, 공익성 확대를 꾀함이 PQ제도의 긍정적효과로 사료되며, 신기술, 특허의 인정 및 활용의 범위를 안전진단의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시 적용함을 한정함이 향상된 기술용역 수행을 통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2020.03.10.) 내용 중 [별표1.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에서도 기준완화의 목적으로 [활용실적 항목에 대해서도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항목별 기준점수에서 차등을 두고 있기에 이중적 제한을 없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따라서,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삭제 필요하며 특허 및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은 기준 점수에 기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한은 필요치 않음. - 개발 및 활용실적을 설계등과 같은 용역업과 비교하여 안전진단업에 특허 배점 한도를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p>3) 타 발주기관의 현재 PQ 기준과 동일하며 타당하단 의견이 다수.</p> <p>4) 타 발주기관의 현재 PQ 기준과 동일하며 타당하단 의견이 다수.</p>

제정안	협회안	사유
<p>《업무중첩도》</p> <p>1)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p> <p>2)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가 다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p> <p>3) 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 자료로 평가한다.</p>	<p>《업무중첩도》</p> <p>1)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p> <p>2)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모든 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p>3) 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 자료로 평가한다.</p>	<p>1) 좌동</p> <p>2)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용역이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체용역(건설기술진흥법으로 평가, 선정하는)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p> <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03.10.) 내용 중 [별표1.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업무중첩도 평가부분에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단, 사후환경조사는 제외) 업무중복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평가, 선정하고 있기에 설계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도 포함하여 업무중복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만 수행하는 전문업체에 비해 종합엔지니어링사들은 모든 면허를 보유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 담당하는 부서들은 설계등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중복도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사료됨.</p> <p>3) 좌동</p>

제정안	협회안	사유
<p>가점항목 :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p> <p>1)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청년신규기술인 고용율 중 낮은 값을 적용하여 기준에 따른 배점</p>	<p><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p> <p>1)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로 인한 가점 항목임으로 청년 신규기술인 고용율만 산정 평가</p>	<p>1) 타 발주기관의 가점항목과 동일한 항목인 청년신규 기술인의 참여 평가의 가점 적용기준이 조달청을 제 외한 <u>모든 발주기관(공공기관, 관공서)의 배점적용 및 산정기준이 동일함. 이를 표준하여 배점토록함</u>이 형평성에 맞다 사료됨.</p>